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효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6일
발 의 자: 이효원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원중,
문성호, 송경택, 윤영희,
이상욱, 이종배, 이종환,
이희원, 허 · 훈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을 조례에 명시하여,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책무를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, 국민체육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·연구 개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7.</u>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·연구 개발</u></p> <p>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